要約

□ 감사기간: 2022. 2. 11. ~ 3. 14. (20일간)

□ **범** 위: 2017. 1월 ~ 2021. 12월 말까지(5년) 기금운영실태

□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구분	처분현황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시정	주의	회수	세입조치	미끄
계	5	-	5	-	-	

【세부내역】

기금 명	지적사항	처분내역 (행정상)	관리부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문화관광과
경제활성화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일자리경제과
사하보지기그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주의	어르신장애인과
재난관리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안전관리과



1. 기금 별 지적사항 내역

기금 명	지적사항	처분내역 (행정상)	관리부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문화관광과
경제활성화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복지정책과
시 <u>외</u> 축시기급	기급한다정보시으럼 사용 오늘	주의	어르신장애인과
재난관리기금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주의	안전관리과

2. 세부 지적사항

□ 기금관리정보시스템 사용 소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기금은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제52조(회계장부의 비치와 보고)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 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에 관한 훈령」제17조(징수결정통지)제1항에 따르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그러나 문화관광과 외 4개 부서에서는 기금을 운용하면서 이자수입 등 기금수입 발생 시 기금관리정보시스템(e-호조)을 이용하여 징수결정·결의하여야 했으나 시스 템 사용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